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가단1371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2. 3.자 부동산 매수대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소에 대한 답변이 없어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므로 예비적 청구취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설민수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D에 있는 E아파트 F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G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D 대 23053㎡

2. 부산광역시 금정구 H 대 17420.3㎡

3. 부산광역시 금정구 I 대 170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J호 철근콘크리트조 57.1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7227641210000분의 119566635800

2 소유권대지권 73471334671000분의 89640540140

3 소유권대지권 7179991168000분의 7588574770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가. 소외 주식회사 K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9445양수금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2015.11.18. 위 법원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4,044,368원과 그 중 6,368,397원에 대하여 2015.1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2015.11.23. 송달되어 2015.12.08.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지급명령결정문)

나. 한편,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은 2022.07.25 현재 7,967,363원입니다.

(갑 제2호증 채권계산서)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로서의 가액배상(주위적 청구)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

피고는 소외 L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2020.02.03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02.25. 접수 제6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나. 소외 C의 사해행위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C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의도로 자신의 처(妻)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위 등기원인일인 2020.02.03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되는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소외 C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그 매수자금을 증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피보전권리

1)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2)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위 매매계약 이전인 2003.09.30. 소외 C는 소외 M 주식회사 (이하 'M'라고 합니다.)로부터 대출 받은 후 대금 등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위 M이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K를 순차적으로 양도하

고 2021.12.17 또 다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 여신거래약정서, 갑 제5호증의 1 채권양수계약서, 갑 제5호증의 2 양도 통지서,)

라. 소외 C의 무자력

소외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C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만을 감안하더라도 소외 C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즉,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됨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마. 채무자(소외 C) 및 수익자의 악의

1) 소외 C는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이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C의 사해의 의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2) 피고 역시 소외 C의 처(妻)라는 점, 피고는 직장이나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부터 매수할 당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의(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소외 C가 무자력이 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함,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 29916 판결)임이 명백하고(한편, 사해행위의 전형적인 경우인 부부간의 증여에 있어서

수익자인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악의를 추정할 필요도 없이, 채무자와 수익자가 부부관계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시점에 즈음하여 처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면 일용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C와 피고는 부부지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C 및 피고가 악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 가액배상

(1)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수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소외 L에게 소유권이전 받은 2020.02.25. 이후인 2020.03.06. 이 사건부동산 6번과 9번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2020.04.1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으로 1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소외 C가 수익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그 금전으로 피고가 부동산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 증여한 금전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받은 금전 상당을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가액배상액

이 사건 손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는 145,000,000원 중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권 6번과 9번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인 99,120,000원을 공제하면 45,880,000원이 일반채권자들에게 인정되는 책임재산이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액은 원고의 채권액 중 일부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인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 소결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02.03 부동산 매수대금 증여계약은 손해행위로서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명의신탁약정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C는 원고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0.02.03 매매인 소외 L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이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그로 인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피고는 피고의 부(夫)인 소외 C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금45,000,000원 이상을 부당이득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소외 C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현재 소외 C는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

자력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C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무자력인 소외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무자력인 소외 C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무자력인 위 소외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금20,000,000원 중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액중 일부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4. 이 사건의 토지관할

가.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결정에 따를 때 원물반환과는 달리 가액배상의 경우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금전채권채무관계이고, 실체법이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 후단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위 C의 채권자로서 위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